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민규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066호

다. 제출일자 : 2020. 12. 1.

라. 회부일자 : 2020. 12. 3.

2. 제안사유

-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률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8. ~ 12. 1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¹⁾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의를 관련 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19년에 현행 조례를 제정²⁾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1) 「도로교통법」(’20. 9. 6일 개정, ’20. 12. 10일 시행)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호와 21호 생략)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19. 5. 16일 제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이용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명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는 다소 중복되는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해 조정도 필요할 것임